

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	처리기간	5일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		
	자격번호(면허번호)	국적		
공동수임 사무소	사무소명	구분 [] 개인 [] 법인		
	소재지	(전화번호:)		

「건축사법」 제23조제5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건축사협회 회장 귀하

첨부서류	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(면허증) 사본 가.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(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이 공증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자격증(면허증) 나.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,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증번역본이 첨부된 자격증(면허증) 2. 증명사진(3.5cm×4.5cm) 2장	수수료 2만원
담당직원 확인사항	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[건축사협회 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(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)를 첨부해야 합니다]. 다만, 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하여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않은 국가의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의 확인이나 첨부를 하지 않습니다.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사협회 회장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